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0, Number 1, Mar, 2008: pp. 315~327
통상정보연구 제10권 1호 (2008년 3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08. 2. 7.
게재확정일자 : 2008. 3. 20.

국내은행 외환수수료의 국제경쟁력 비교

The Comparison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Banks' Foreign exchange commissions

안영태(Yeung-Tae Ahn)
Market Network Corp 대표이사,
겸임교수 호원대 무역경영학부

목 차

Ⅰ. 서 언
Ⅱ. 국내은행 외환수수료의 현실
Ⅲ. 국내은행 외환수수료의 국제경쟁력 개선방향
Ⅳ. 결 언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According to the Bank Profitabilities Statistics of OECD members, Our domestic banks applying commissions for both exchange and selling/buying foreign currencies are evaluated as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banks. The theory indicates an analysis results and comparison in between banks over the world. Our domestic bank assert that, in general, the aggregated banking commission income is low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by comparing in the field of non-interests profits. Viewing by another analysis in details, some commission rate applying to domestic services are far below than cost basis, but other commission rate applying to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services is abnormally higher. Such unfair rate should be lowered to the similar level to other banks in the world and also the actual cost should be reasonably reevaluated in the reasonable manner. One more thing, The writer suggest that domestic banks should spend efforts to increase their income by improving and diversifying with the various type of new commissions applied to domestic market, such as multi-functional financial services, expanding ATM services, electronic settling technique etc under today's rapidly changing and opening world financial market.

Key Words : Banks exchange commission, Bank competitiveness.

Ⅰ. 서 언

국내기업들의 수출입 거래 시 발생되는 환가료와 외환매매수수료는 금융부대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취급수수료율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비례적으로 악화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1997년 외화위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약 3 배 이상이 인상되었다. 물론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외환팀을 운영하여 외환딜러를 고용하거나 외국환은행과 계약을 통하여 현물시장에서 외환을 선 확보하여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체들은 그렇지 못하여 수출입 시에 각종 금융부대비용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은행 측의 입장은 외화조달 금리와 대손금 설정액 그리고 고정비 등을 감안해 볼 때 인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해외은행들과 비교해 볼 때 국내은행이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액 전체대비 비이자수익 부문이 차지하는 수익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거래에 적용하는 외환취급수수료율만 비교하면 해외은행들 보다 월등히 높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3 배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금융수수료율은 낮은 반면 외환취급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국내은행의 국제신뢰도가 크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환조달 금리가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은행의 입장은 심사숙고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높은 외환취급수수료로 인하여 은행 측의 수수료수익은 증대하겠지만 수출입업체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출입시 발생되는 금융부대비용 중에서 특히 외환매매수수료와 환가료에 대하여 OECD 가입국별 은행의 적용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적용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선진금융서비스로 전환, 국내은행의 업무영역의 확대, 현실적인 수수료율의 책정 그리고 은행 수익성의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같은 적극적인 선진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서 급속도로 개방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한다.

Ⅱ. 국내은행 외환수수료의 현실

일반적으로 환이라 함은 국가 간의 채권 혹은 채무관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혹은 영수하는 수단으로, 외국환이라 하면 대외지급수단을 의미하며 외국통화,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외국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환거래은행[1] (Correspondent bank) 은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일정액의 취급수수료를 받게 된다. 외국환거래의 특징은 내국환거래와는 달리 환율의 기재, 이자요소의 개입, 국제간의 대차관계가 발생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환위험(Foreign exchange Risk)이 존재하게 되고 내국환과는 다르게 복잡한 국제간 결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같이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 지급 받는 과정 중에 환율의 변동은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그 방식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외국환의 결제방식은 크게 송금방식과 추심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송금방식은 보통송금[3] (Demand draft), 우편송금[4] (Mail transfer) 및 전신송금[5] (Telegraphic Transfer)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추심방식은 송금방식과는 반대로 채권자가 역으로 청구하는 역환이다. 추심하는 방향에 따라 당발추심[6] 과 타발추심[7] 이 있다. 이 같은 송금방식 및 추심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외국환거래은행간의 매매환율을 1992년 7월 1일 이전에는 환율 변동 폭을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 이내로 제한해왔었으나 그 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제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매매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완전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제간의 대차관계 정산 시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환위험으로부터 은행 측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환매입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와 환가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외화현찰 매매시 적용되었던 통상 매매기준율의 3% 내에서 가감한 비율을 은행별로 차등 적용해오던 제도도 역시 해제 시켰다. 따라서 이제는 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외환취급 수수료는 현찰매도율의 경우는 매매기준율 + 현찰수수료율을 그리고 수입어음결제율은 전신환매도율 + 환가료율로 각각 자율적이고 차등적인 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환취급수수료율이 국내은행마다 천차만별하고 너무 높아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 국내은행별 환매매수수료 비교

기업의 수출입대금 환전 시 적용하는 환율은 전신환매입/매도 환율이 아닌 매매기준율에 근접한 가

1) 송금, 무역거래, 자본거래 등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추심, 지급 등이 각각의 소재지국가의 자기거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상호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말한다. 예금계좌가 개설된 경우를 예치환거래은행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무예치환거래은행이라 한다.

2) Richard E. Caves, Ronald W. Jones, World Trade & Payment, 4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84.

3) 송금수표방식을 이용하며 발행인이 수표발행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수취인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수취인은 송금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은행에 제시하고 송금대전을 찾는 방식이지만 위험부담이 크므로 주로 소액 결제에 이용된다.

4) 우편송금환은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임하는 지급지시서를 동시에 발행하므로 확실하지만 시일이 급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5) 우편송금환과 같은 지급지시 방법을 이용하며 다만 지급지시가 전신(telegraphic)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속하다 그러나 비용이 그 만큼 크다.

6) 국내은행이 외국이 지급지인 외화수표나 어음을 매입하거나 매입의뢰를 받아 지급은행에 직접 혹은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을 말한다.

7) 해외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이 우송되어온 경우로서 외국환의 채무자 즉 지급인에게 추심대금을 결제하도록 통지하여 그 대금을 받고 환거래은행이 해외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격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실시간 거래(real time trading) 혹은 실시간 매매에 따른다. 실시간 매매란 현재 은행 간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 환율(market price)로 수출입용 외환을 사고파는 것을 말하는데 전신환 매도·매입환율이 아닌 실제 환율을 적용함으로서 환전수수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일 매도된 US$ 1,000,000 매도 건에 대해 실시간 매매환율이 920원/US$ 에 결정되는 경우에 실제 은행 전신환율로 환전하였을 때, A은행의 실시간 기준율이 920원/US$ 그리고 전신환 매입율이 884원/US$ 인 경우,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50% 우대전신환매입율[8]을 적용하여도 환전금액은 902원/US$ X US$1,000,000 으로 산출되어 고객의 실 수령액은 9억2백만 원이 된다. 그러나 당일 거래된 실시간 시장 환율(market price)이 920원/US$ 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9억 2천만원이 되어 일천 8백만원의 환차이익이 발생되는 것과 같다. 1997년 11월 IMF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외환위기이전에는 0.4% 이었던 전신환 매입매도율이 현재는 국내은행마다 다르지만 미화, 유로화, 엔화에는 평균 1.5%를 적용하고 기타통화는 1.75 % -3 % 까지 3 배 이상 인상되어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회정무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는 0.39% 이었던 환매매수수료율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시티, 기업, 산업은행 등 9개 은행의 평균이 2000년부터 1.5 %로 이는 약 4 배 인상되었다. 특히 이들 은행들은 2005년 과 2006년, 단 2년간 미국달러와 일본엔화 환전 과정에서 3,348억 원의 수익을 벌어 들여 외환위기 이전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약 2,000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이 은행이 환매매수수료율을 올리면 수출중소기업체들과 유학, 여행목적 개인고객들이 부담하게 되고 특히 무역업체의 평균수출마진율이 11.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수출 마진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셈이 된다. 5월말 기준 외화거래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미 달러의 전신환 매매율 스프레드[9]는 산업은행(1.8%)을 제외하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시티, 기업 등 8개 은행이 모두 1.9 - 2.0%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표 1〉 국내은행의 외화수수료수익 구조 추이

(억원)

	2000	2002	2003	2005
원화수입수수료(순)	7,636	10,571	17,473	
송금수수료	2,048	2,341	2,158	
기타원화수입수수료1)	4,354	6,612	12,175	

8) 은행 측에서 시장 환율과 은행매입환율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특별히 우량고객에게 이 차액에 대하여 30%에서 50% 까지 우대하여 적용하는 기준 환율임.

9) 외국환매도수수료율과 매입수수료율을 더한 것으로 은행이 외국환매매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의 합계임(은행의 달러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것임)

외화수입수수료(순)[10]	4,317	4,695	5,167	8,293
수수료이익	11,953	15,266	22,640	약 50,000

주 : 1) 기타 원화수입수수료 중 전자금융수수료, CD/ATM 인출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예금계좌관련 수수료의 비중이 은행별로 50~60%에 달함

상기 (표1)에서 보듯이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원회 김 애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18개 은행이 올린 외화수입수수료는 2005년에 8,293억 원 그리고 2006년 에는 7,910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2007년도 1/4 분기 중에 1,925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비이자수익 부문인 수수료 총 수입 중에 외화수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6%, 2006년 13.7 %, 2007년 1/4 분기에는 12.3%로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환가료 산출근거의 비현실성

수출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중에서 80 - 90%를 차지하고 있는 외환매매수수료와 환가료의 산출방식을 아래와 같다. 외환매매수수료는 수출금액에 매매율을 곱한 후 여기에 매매기준율을 곱하게 되므로 환율이 상승하면[11] 할수록 환취급수수료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1997년과 10년이 지난 2007년 11월 기준을 근거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1997년 11월 환취급수수료 총액 : 5,333,610원

- 외환매매수수료 ; US$ 1,000,000 x 매매율 (0.4 %) x 기준환율(910원) = 3,640,000원
- 환가료 ; US$ 1,000,000 x 환가료(6.7%) x 매매기준율(910원) x10/360 = 1,693,610원

(2) 2007년 11월 환취급수수료 총액 : 17,655,554원

- 외환매매수수료 ; US$ 1,000,000 x 매매율(1.5%) x 매매기준율(908원) = 13,620,000원
- 환가료 ; US$ 1,000,000 x 환가료(8%) x 매매기준율(908원) x 10/360 = 2,017,777 원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의 환취급수수료는 (1) - (2) = 12,321,944원 이 실제로 인상된 액수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월의 환가료율은 리보(Libor)[12] + 1 % 로 산출하였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적용하는 율은 Libor + 3.0% 로 매우 높다.

---

10) 외화수입수수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본다.
11) 환율의 상승은 원화가 외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12) 리보(Libor)는 국제적인 금리평균을 의미한다.

〈표 2〉 우리나라 외환수수료 추세

	97년 9월	1999 년	2000년	2007년
환가료율[13]	L[14] +1.0%	L + 2.0 %	L + 2.5 %	L + 3.0 %
외환매매수수료[15]	+/ - 0.4%	+/ - 1.0 %	+/ - 1.5 %	+/ - 1.5 %

자료 : 무역협회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조달하면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그 국가의 신인도가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 10년 전과 비교할 때 국가 신인도는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시중은행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외환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이자율이 낮아져야하지만 국내은행들은 환수수료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국내은행의 외환수수료 비교

은 행 명	국내외화 이체수수료(원)	외화수표 매입수수료(원)	외화수표 추심수수료(원)	외환현찰수수료	
				$, EUR, JY	기타통화
우리	2,000-20,000	5,000-20,000	0.1% x 기준율	1.5 %	3 %
SC제일	2,000-12,000 (0.05% x기준율)	5,000-15,000	5,000-20,000	1.5 %	2.5 %
외환	5,000-10,000	5,000-20,000	5,000-25,000	1.5 %	3 %
산업	5,000-20,000 (0.05% x 기준율)	0.1% x 기준율	0.1% x 기준율	1.0 %	2 %
하나	10,000	5,000-15,000	7,000-30,000	1.5 %	3 %
기업	5,000-10,000	5,000-20,000	5,000-20,000	1.5 %	3 %
농협	5,000-10,000 (0.05% x 기준율)	5,000-15,000	5,000-20,000 (0.1% x기준율)	1.5 %	3 %
광주	5,000-10,000	10,000 / 건	1,000-20,000	1.8 %	1.8 %
부산	5,000-10,000	3,000-7,000	3,000-10,000	1.75 %	1.75%
대구	5,000-10,000	5,000-15,000	5,000-20,000	1.79 %	1.79%
시티	5,000-10,000	8,000-15,000	10,000-20,000	1.5 %	3 %
전북	3,000-8,000	5,000-20,000	5,000-20,000 (0.1% x기준율)	1.5 %	3 %
국민	5,000-10,000	10,000	7,000-20,000	1.5 %	3 %
신한	5,000-10,000	10,000	10,000-20,000	1.5 %	3 %

13) 환가료율은 일시불(at sight)을 기준으로 함.
14) Libor는 1 개월 내지 3 개월짜리 기준임
15) 외환매매수수료는 전신환기준임

Ⅲ. 국내은행 외환수수료의 국제경쟁력 개선방향

국내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크게 예금수수료, 대출수수료 그리고 외환수수료로 대별할 수 있다. 예금수수료는 송금수수료 ·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 기타 수수료로 세분화되며, 대출수수료는 담보조사료 · 채무인수료 · 개인신용평가비용 · 부채증명서 · 수수료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외환수수료는 국내외환이체 수수료 · 외화수표매입수수료 · 외화수표추심수수료 등이 있다. 금융 산업이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수수료의 종류도 고객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무한 경쟁체제에 일찍부터 돌입되어 있다. 미국의 워싱턴뮤추얼뱅크는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국내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에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지점숫자가 많지 않아 이용도가 높지 않고,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프라임고객에 한하여 인터넷뱅킹 · 텔레뱅킹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한 경우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외화송금 등 일부 외화관련 수수료의 경우에 30%에서 50%까지 할인을 받고 있지만 고객의 등급에 따라 적용하므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내국은행들은 아직까지는 선진국들처럼 다양하게 수수료를 적용하는 은행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원회 차명진의원에게 제출한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외환 · SC제일 · 한국시티등 주요 7개 은행이 지난해에 거둔 수수료 수입은 4조 2,14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기 수수료, 외국환,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여신 제증명, 신용조사 등 각종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었다. 지방은행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 총액은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6년 동기간 보다 11% 증가한 것이며 시중은행들의 2007년 상반기 순수익이 10조 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비이자수익부문인 수수료수입이 그 절반은 차지하고 있다.

〈표 4〉 국별 총수익대비 은행수수료 이익비중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영국	미 국	화 란
58.6 %	56.7 %	48.9 %	47.1 %	46.4 %	44.6 %	39.2 %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독 일	한 국	일 본	평 균
38.8 %	30.3 %	30.2 %	27.1 %	13.1 %	11.8 %	37.9 %

자료 : OECD (bank Profitability Statistics 2003년 기준(한국 2005년)

환가료를 인하시키지 못하는 은행 측의 입장은 국내시중은행의 외화 조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행의 외화지원금리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외환매매수수료의 경우에도 환율의 변동이 심하여 그 위험이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손 충당금의 설정금액도 외환위기 때 보다는 월등이 인상되어 이를 소비자들이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HSBC)의 경우에도 외환매매수수료를 0.6% 수준이고 환가료율도 Libor(1개월) + 1.5% 수준으로 국내은행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은행의 외환매매수수료 1.5%는 OECD국들과 비교해서 2배 이상이며, 환가료율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표5〉 환가료율의 국가별 비교

	일 본	벨기에	독 일	한 국
환가료율	L + 0.801%	L +0.683 %	L + 0.104%	L + 3.0%

자료 : 무역협회

〈표 6〉 외환매매수수료율 의 국가별 비교

대 만	일 본	벨기에	독 일	한 국
+0.3/ -0.1%	+ 0.8%	+ 0.7%	+ 0.1 %	+ 1.5 %

자료 : 무역협회

상기와 같이 국가별 비교에서도 국내은행이 부과하는 환가료 및 환매매수수료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외환취급수수료가 아닌 국내거래에서 부과되는 각종 은행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국내거래에서 발생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화하여 국내수수료율을 현실화시키고 환거래시 부과하는 수수료는 대폭 인하 하여 채산성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금융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행들은 ATM을 통해 현금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일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주식매매와 우표·상품권·스포츠경기입장권·전화카드 등 다양한 상품판매를 통해 은행수수료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여타 경로보다 저렴한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티은행은 1993년부터 ATM을 이용하여 주식, 채권 및 뮤추얼펀드 등 각종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ATM을 통해 뉴욕증시 각 종목의 호가 상황과 투자 코멘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여 ATM을 통한 주문 시 수수료는 증권사를 통한 주문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웰스파고은행은 1998년 북캘리포니아 지역에 설치된 ATM에 인근 스키장의 리프트티켓 판매기능을 추가하는 등 내국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한편, 외화취급수수료는 인하하여 기업체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표(7)에서 보듯이 무료로 제공하던 외환취급수수료의 일부분을 신설하는 등 기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가격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국가경쟁력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속히 해결해야할 대안을 제시코자한다.

〈표 7〉 우리나라 은행의 외환취급 수수료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설된 외환수수료	구매승인서 발급수수료	무료	3,000-4,000원
	수출입실적 발급수수료	무료	1,000-2,000원
	Shippers' Usance 인수수수료	0.25%/3개월의 term charge만 부과	0.4%/3개월 고율의 인수수수료 부과
	국내 타 은행앞 외화 이체 수수료	무료	5,000원 - 10,000원
	L/C 분실 신고 수수료	무료	50,000원/건
인상된 외환수수료	내국신용장 개설 수수료(최저)	0.065%/3개월 4,000원/건	0.095%/3개월 8,000원/건
	L/G 발행수수료 (수입화물선취보증)	7,000 원/건	10,000원/건
	L/G 최저수수료	8,000 원/건	10,000원/건
	타발추심수수료	요율 0.05% 2,000-5,000원/건	요율 0.1% 5,000-10,000원/건
	우편료	7,000-22,000원/건	8,000-22,000원/건
	Re-nego 환가료 적용 일수	3일 + 9일	3 은행일수 + 9일
	구매승인서	신설	3,000원/건
	수출입실적증명발급	신설	2,000원/건
	Shipper Usance 인수 수수료	신설	0.48%/년 (만기적용일 기간중term charge 면제)

자료 : 무역협회

첫째, 정부는 대 은행 지원업무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외채 상환지원자금의 금리를 인하시켜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하여 단기성 외환영업자금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특히 외환보유고가 2,600억 달러 이상임을 감안) 이렇게 함으로서 환가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은행들은 환율변동 폭의 심화로 인한 환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고객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지 말고 은행 자체적으로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외환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금융시장

에 적극적으로 개입 환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셋째, 국내은행들은 비이자수익부문인 각종 수수료 수익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문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는데 그 밖에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각종 국내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 같은 원인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수료 원가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외환수수료 수익에 편중하지 말고 원가이하수준인 국내 각종수수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만큼 상대적으로 외화취급수수료는 낮추어야 할 것이다.

〈표 8〉 주요 수수료 금액 및 업무원가 비교

(원)

수수료 종류	수수료 금액(A)1)	업무원가(B)2)	원가반영률(A/B, %)
구 송금(창자행)	1,000~2,000	4,580	21.8~43.7
창구 송금(타행)	2,000~4,000	4,390	45.6~91.1
자기앞수표발행	50~100(정액) 300~400(일반)	2,330 3,460	2.1~4.3 8.7~11.6
어음수표용지대금	10,000~12,000	27,120	36.9~44.2
제 증명서발급	2,000	5,620	35.6
통장재발급	2,000	3,170	63.1
직불카드재발급	2,000	11,420	17.5
외환 당발송금	최저 5,000~10,000 최고20,000~30,000	27,090	18.5~36.9 73.8~110.7
자동화기기이용	0~1,200(인출시) 0~2,500(송금시)	290	0~413.8 0~862.1
인터넷뱅킹이용	0~700	190	0~368.4
텔레뱅킹이용	0~1,000	50	0~2,000.0

주 : 1) 8개 시중은행 기준 2) 2개 시중은행의 평균치 기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이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 요금의 원가계산을 현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는 활동기준 원가산정방식[16] (ABC : Activity-Based Costing)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되도록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원가요소의 반영 및 적정한 배분,

16)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분류·분석하고 각 활동별로 원가배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각 활동의 종류와 양에 따라 업무수행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

각 활동별 소요시간의 정확한 측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외환취급부문도 과감하게 전자금융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관행을 취급원가가 높은 창구서비스에서 전자금융서비스[17]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창구서비스 수수료율과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율 간 차별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의 송금수수료율 변경추이를 살펴보면 창구서비스 수수료율 인상 시 대체로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율도 함께 인상하는 관행을 보여 왔다. 이로서 고객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고객에 대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부터 상당한 편익을 얻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수익자 부담원칙의 불가피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은행이 징구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은행이 대고객 서비스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대한 고객들의 수용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은행의 업무영역을 겸업화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더욱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한다. 물론 2008년부터 방카슈랑스[18] 4 단계 개방과 함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점은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금융의 겸업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은행이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 분야에 있어 국내은행들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하여도 투자자문업[19]을 겸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Ⅳ. 결 언

세계금융시장이 급속도로 개방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이미 진출해 있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그 숫자는 더욱더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은행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은행의 주 수익원을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수수료율 산정방식도 과거의 습성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인하여 환거래에서 발생되는 국내은행들의

17) 전자금융서비스의 경우 구축단계에서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나, 일단 구축된 다음에는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원가는 미미

18) 은행(bank)와 보험(Insurance)의 결합어로서 은행에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조어이며 순수한 우리말로 은행연계보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

19) 금년부터 「자산운용 법」 시행으로 국내은행들도 자산운용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타 자산운용회사(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투자자문업의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PB업무의 주 수익원 중 하나인 투자자문수수료의 수취가 불가하게 되어 있다.

외환취급수수료는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타국들과 비교해도 국내은행이 부과하고 있는 외환취급수수료 중에서 환가료와 외화매매수수료 부문은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높다. 그러나 외환취급수수료가 아닌 국내에 적용하는 일반수수료율은 원가이하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진금융국가들과 같은 다양화한 금융서비스의 부재가 원인이 되고 있다. 오히려 외환취급수수료 수익부문에서 국내수수료의 손실을 보상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자유변동환율제하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차손뿐만 아니라 고율의 외환매매수수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은행 측이 시급하게 하여야 할 일은 우선 고율의 외환취급수수료 수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과감하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그 율을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은행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면서 고객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외환전문가를 양성하여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구 노력과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자체적인 환리스크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 외환수수료부문 개편하여 과감하게 외환취급업무도 전자금융서비스로 전환하여 원가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여야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은 현행 적용되고 있는 각종수수료의 원가구조의 심층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현실화된 수수료율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도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게 적용하고 있는 외채상환 금리를 인하시켜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환가료 산출근거가 되는 외화조달위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이 업무영역을 확대 및 겸업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정책 및 법률을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방카슈랑스 4 단계 개방이외에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도 조속한 시행도 바람직하다. 이 같은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선진금융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하여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수료율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겠으나, 다만 본고를 통하여 환거래 수수료율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전환점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필자의 희망이다.

20)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출자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37조 1항 및 2항, 보험업법 제106조, 108조, 10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개념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확대를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다. 증권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그 핵심 골자이다.

참 고 문 헌

한국무역협회 「외환관리실무 II」 (주)보성인쇄, 2003년.

최동수. 유지성 「디지털경제」 (주) 박영사, 2007년.

김시담, 「통화금융론」제 7판, 박영사(양영각), 2004년.

김겸순,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은행간 환율과 대고객환율 " 26P, 경영과 회계, 2003년.

최기억, 「환율지식은 모든 경제지식의 1/3」133P -135P, 거름,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은행 국 은행연구팀, "은행수수료 수익의 국제비교 및 향후", 1994년

조샛별, " 은행수수료비교 및 수수료공시 실태조사 ", 외환관련 수수료, 2, 15, 20 P. 한국소비자 보호원 2003년.

최봉혁, " 외환매매 차이와 외환관계 수수료", 중재 116(81.9), 대한상사중재원, 1981년.

안태식, 정형록, 송승아, "은행서비스 원가산정방식 개발 및 적용" - 수수료 부과서비스 중심으로 - , 「하계학술 발표회 논문집 2006 」27P. 2006년.

지동헌, "2006년 국내은행의 손익전망과 대응방향" 「주간동향브리프 15권 12호」 12P. 2006년.

고영만, "불합리한 외환수수료제도 개선 방안" 월간무역 421호, 한국무역협회, 26-28 P. 2001.

Ralph H. Folsom, Michael Wallace Gordon, John A. Spanogle, Jr :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2nd, West Publishing Company,1991.

Richard W. Caves, World Trade & Payments, 4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84.

Charles W. Mulford, Eugene E. Comisky : "the Financial Game : Detecting creative Accounting Practices, 2007.

Joel Seligman : "The Transformation of Wall street ; A History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Modern Corporate Finance. 2003. 6.

Archie Richards : "All about Exchange Traded Funds" 2002. 7.

Larry Harris : Trading and Exchange ; Market Micro Structure for Practitioners. 2002. 9

OECD : Bank Profitability Statistics for 2003.

www. maybank2u.com.my/bank charge/html

www. news.chosun.com/site/data/html

www. lbk.co.kr 기업은행 홈

www. kofex.com 한국선물거래소 홈

www. fss.or.kr 금융감독원

www. kfb.or.kr/cas html/ 전국은행연합회